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

[고영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721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5. 5. 29.

발 의 자 : 고영찬 의원

찬 성 자 : 정순기, 고성미 의원

1. 제안이유

관내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
눈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의료비 등의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
적기에 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력 교정 및 눈 건강 증진을
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3조 및 제4조)
다.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, 협력체계 구축(안 제5조~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1)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, 제4조

2)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: 2025. 5. 30. ~ 2025. 6. 5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 건강 교육 및 검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2. “저소득층 아동”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.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

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3. “눈 건강 교육”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, 눈 질환 및 외상 예방, 저시력 체험,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, 눈 건강관리 방법 등 눈 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정책의 방향
2.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
3. 저소득층 아동의 민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
4.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원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제2조제2호의 저소득층 아동
2.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동
3.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안과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아동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저소득층 아동 시력검진 및 눈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·관리방법 교육
2. 저소득층 아동 안과 의료비 지원
3. 저소득층 아동 안경 구입비 지원
4. 그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 건강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「아동복지법」

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85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1. 28.>

1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~ 11. (생략)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3. 22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. 28., 2016. 3. 22.>

□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·교육·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